

세무와회계저널
제18권 제1호 2017년 2월 pp.45~75
한국세무학회

연기금의 해외투자 운용에 따른 면세단체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미국 Section 892를 중심으로 -

김수성** · 최원석***

<요 약>

최근 연기금은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투자방식인 해외단독 사모펀드 투자형태보다는 해외투자 일임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과거 해외단독 사모펀드 투자형태는 펀드의 운용주체가 자산운용사로 되어 있어 운용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자산운용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세제상의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해외사모단독 집합투자의 형태가 투자일임의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자금의 관리운용주체가 국내 연기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무조정 및 과세상 이슈가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내 연기금은 해외투자에 있어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가 없다. 이는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에 비해 다소 불리한 세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기금이 해외 투자대상국의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세단체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면세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대상국가와 면세단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잡함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양국 간의 상호협약에 따른 면세단체규정이 필요하다.

미국은 우리나라 연기금 등의 해외투자자로서 인한 금융소득 중 일부에 대해 면세단체로 규정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연기금이 투자국의 해외 국가기관에 해당되면 면세하고 있다. 미국 세법상 해외 국가기관은 국가의 일부(Integral Part)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관(Controlled Entity)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가의 일부로 보는 경우는 Integral Part로 규정하여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면세하고 있지만,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관인 Controlled Entity로 간주되면 주식 및 채권투자로서 인한 금융자산 운용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 본 논문은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주장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세무학박사, mercury@tp.or.kr, 주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wschoi@uos.ac.kr, 교신저자

이와 같은 해외투자에 따른 과세상의 문제를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연기금을 미국 세법상 면세단체로 규정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미국과 국내 연기금 간의 상호협약을 통해 면세단체로 규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언급하였다. 즉, 양 국가 간에 상호협약을 통해 국가가 인정한 연기금인 경우에는 상호간 면세규정을 두어 투자국이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에서 인정하는 모든 연기금에 대해 면세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상호협약을 통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연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국제조세적인 측면을 금융세제와 연결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투자일임, 면세단체, 국가일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관, 상호협약

I. 서 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는 해외사모 단독펀드의 운용이 금지되어 국내 연기금은 2인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펀드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해외투자일임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운용형태를 바꾸어야 했다. 즉, 수익자가 1명인 사모단독펀드의 투자형태는 원칙적으로 2015년 1월부로 금지토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관투자자의 하나인 연기금은 주로 사모단독펀드의 형태로 투자일임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최근 해외일임의 단독투자의 형태인 해외투자일임의 형태로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해외투자일임과 해외사모 단독펀드는 외관상 비슷해 보이나 많은 차이가 있다.¹⁾ 해외투자일임의 형태는 해외사모단독펀드에 비하여 회계처리가 다소 복잡할 뿐만 아니라 현행 세법상에서도 해외사모단독펀드에 비해 다소 불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분배시점의 투자 운용수익률은 동일하지만, 분배이익을 소득유형에 따라 과세하는 형태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게 됨에 따라 투자일임의 형태보다는 집합투자기구의 소득분배가 다소 유리하다. 집합투자기구의 분배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처리 할 수 있지만 해외투자일임의 형태는 소득유형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비율을 달리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할 수 있다.²⁾

- 1) 해외사모단독펀드는 자산운용사가 단독으로 집합투자기구를 하나의 투자자만을 받는 것으로 약관에 따라 투자를 하며 투자운용의 주체가 자산운용사가 된다. 반면 해외투자일임은 국내 연기금 등이 국내연기금의 명의로 자산운용사에 투자의 권한을 일임하고 투자지침서에 따라 운용토록 하는 위탁형투자를 말한다. 가령 S연기금이 해외자산운용사에 500억원을 투자를 맡기되 투자자산의 소유를 S연기금이 소유하고 있으면 해외투자일임이라고 하며, 단독으로 500억원을 해외자산운용사에 맡기되 투자자산을 해외자산운용사가 소유하고 있으면 해외사모단독펀드라고 한다.
- 2) 국내투자는 기 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를 받게 되지만 해외투자를 할 경우에는 기 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받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

최근 연기금은 해외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외투자일임 투자형태에 따른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해외 투자국가의 대표적인 국가로 단연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연기금 등이 해외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부 금융소득 중의 일부에 대하여는 면세단체(Exempt Entity)로 규정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의 금융상품 투자 시에 국가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로부터 투자 시에는 내국세법 892조항을 적용하여 면세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세법 Section 892조항에서는 해외 국가기관이 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연기금과 같은 연기금이 해외에 투자를 할 경우 상업적인 활동에서 얻은 소득 등이 있을 경우에는 Bad Income으로 보아 892조항의 면세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해외 국가기관은 국가의 일부(Integral Part)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관(Controlled Entity)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기관으로 보는 것은 동일하나 양자 간의 차이는 세무적인 측면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일부로 보는 경우는 Integral Part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면세하고 있다. 반면,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관인 Controlled Entity로 간주되면 국내 연기금의 미국의 주식 및 채권투자로 인한 금융자산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최근 이와 같은 세제상의 문제로 인해 국내 연기금은 해외투자 운용에 있어서 사전에 자신의 법적인 지위(Status)가 어느 상태인지를 결정하고 투자한다. 국내 연기금은 해외투자운용에 따라 얻은 소득에 대해 미국 세법 892조항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해외 국가기관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의 수동적인 소득(Passive Income)에 대하여는 면세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각 연기금은 법무법인이나 BIG4에 해당하는 글로벌 회계법인을 통해 각 연기금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대상국에서 면세단체로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 연기금은 미국세법의 관점에서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받은 보고서를 미국 글로벌 보관은행인 커스티디언(Custodian)에게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면 미국 국세청은 국내 연기금의 투자 지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모든 연기금에 대해 투자건마다 투자대상국마다 일일이 자문을 받고 투자대상국으로부터 이와 같은 세제상의 지위를 확인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하고 있는 바, 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은 소득의 발생원천에 불문하고 모두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투자일임으로 투자를 할 경우 그 소득의 발생 원천이 주식매매이익, 채권매매이익 또는 파생상품의 매매이익인 경우에는 동 소득의 50% 상당액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50% 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나마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일부 연기금은 채권매매이익과 사업소득 등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국내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게 되어 국내의 납부세액은 전혀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해외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 해외원천소득은 상대방국가에 원천징수로 납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원천소득세 만큼 국내투자에 비해 다소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며, 이는 기금 운용수익률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요컨대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며, 해외투자로 인해 불필요한 국부의 사외유출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국내의 유사한 연기금에 대해 일부 연기금은 면세단체로 지정받는 반면, 일부 연기금에 대해서는 과세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어 기금 간 형평성이 왜곡되기도 한다. 동일한 성격의 투자를 동일 국가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를 하는 경우 일부 기금은 면세가 되어 해외에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지만, 일부 기금은 해외에 세금을 납부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다시 부과 받게 되기도 한다. 즉 일부 연기금은 해외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기도 하여 연기금 간에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기금 운용수익률 측면에서도 다소 불리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국가기금으로 인정받고 있거나 정부의 일부로 보는 정부기금은 면세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겠지만, 민간단체에 위탁된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892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기금운용주체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동일 형태의 기금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면세단체로 지정되도록 정부차원에서 투자대상국가와 상호협약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연기금 간에 동일한 세법취급을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기금의 운용주체에 따라 국가기관으로 보는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법상 적용상의 차이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기관에 위탁한 일부 기금이 기금의 자주권을 포기하고 정부기관의 일부로 포함되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면세로 적용받고자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연기금 중에서 해외투자가 가능한 여유자금을 갖고 해외자산을 운용하는 기금은 모두 동일한 세제취급을 받아야 할 것이다. 현행과 같이 관리운용주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달라지고, 면세단체의 적용 측면에서 과세취급이 상이할 경우에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지 아니한 해외투자에 따른 과세의 이슈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³⁾ 국내 연기금 중에서 대부분은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기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 납부세

3)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점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ETF 과세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우선, 황규영과 김유라(2013)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강민정(2013)은 해외투자펀드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문수(2007)는 우리나라 현행 간접투자방식 과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기존연구 중에서는 특히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기영(2005)은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안종석과 구자은(2006)은 주요국의 이중과세 배제방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이준규와 정규언(2009)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의 환산과 관련한 과세문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창희(2014)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제반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국제투자펀드의 조세조약에 대해서는 마영민과 오윤(2007)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영한과 문성훈(2009)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금(ETF)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와 세금자본화 문제를 다루었고, 손영철(2010)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금(ETF) 세법개정 내용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를 하였다. 이밖에 홍범교·손영철·기은선(2009)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금(ETF) 및 파생결합증권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액으로 전액 공제받는 기관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해외투자일임의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면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국내 연기금의 해외투자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연기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현실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투자에 따른 해외단독사모펀드와 해외투자일임의 세 부담 차이의 예시를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문제점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해외투자시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연기금의 면세단체 규정을 실현하고자 연기금에 대한 비과세를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투자대상국과 상호협약을 통한 면세단체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미국세법 892 조항은 *Integral Part*와 *Controlled Entity*로 나누어 차별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연기금은 자신의 세무상 지위(*Status*)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각 연기금이 투자대상국마다 자신의 세법상의 지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불필요한 과세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연기금이 세법상 어떤 상태인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 국가 간에 상호협약을 통해 국가기금이나 국가에서 인정한 연기금의 경우에는 상호 간에 면세규정을 두어 투자한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해외 투자시 상호협약을 통해 면세단체로 규정됨에 따라 기 납부세액을 환급해준 사례가 있다. 이를 통해 면세단체의 상호협약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해외투자일임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해외투자일임 전환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상의 이슈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미국 연방세법 Session 892 조항의 이해를 통해 현행 세법의 체계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연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과세이슈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연기금의 해외투자 운용에 따른 면세단체 규정의 과세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Ⅱ. 미국 연방세법 Section 892 조항의 이해

1. 해외사모단독펀드와 해외투자일임의 상호 비교

가. 해외사모단독펀드의 투자가 해외일임투자자로 전환된 이유

2015년부터는 해외투자에 있어서 수년간 유지해오던 해외사모단독펀드를 이제는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2인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집합투자기구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여 해외투자운

용의 대이변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동안 사모단독펀드의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자 한 것이다.⁴⁾ 이에 따라 수익자가 1명인 사모단독펀드는 원칙적으로 2015년 1월부터 해산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유지해오던 연기금 등 공제회 및 우체국예금 보험 등 기관투자가 자금은 사모단독펀드 규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지만 향후 추가 납입이라든지 신규 설정 등 다양한 부분에서 더 이상의 단독 사모펀드의 투자는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그동안 사모단독펀드는 한 명의 투자자 성향에 맞게 운용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주로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가가 선호하는 투자형태이었다.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기관투자가가 집합투자기구인 공모펀드에 가입을 할 경우 자금의 유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반면, 의결권 등을 고려하여 투자일임의 형태로 전환할 경우 회계처리가 다소 복잡하여 사모단독펀드로 투자하는 편이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사모단독펀드는 운용업체도 이런 취지에 동감했고 2011년 관련 내용이 입법 예고되었다. 2013년 5월 법개정의 준비를 통하여 기존에 운용하던 사모단독펀드를 일임이나 신탁으로 전환하거나 2인 이상의 투자자로 구성하는 등 사모단독펀드 규제를 대치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2015년 1월부터는 비로서 사모단독펀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⁵⁾

과거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총규모는 약 187조원 가량으로 전체 펀드 규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단독펀드의 규제를 벗어나기 위하여 이제는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를 지양하고 금융시장의 대이변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형 연기금 등은 기존에 유지해오던 사모단독펀드와 유사한 형태의 해외사모단독투자일임으로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다. 사모단독펀드를 다수인 수인의 사모펀드로 이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모단독펀드를 환매하고 이를 투자일임의 형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사모단독펀드와 투자일임의 세제취급은 상이하게 다르다.⁶⁾ 특히 해외투자를 하는 해외사모단독펀드와 해외투자일임의 세제취급은 더욱 상이하여 이에 대한 세제상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4) 금융위원회에서는 2014년 4월 24일에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은 사모펀드 투자와 M&A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2013년 12월 4일 “사모펀드 제도개편 방안” 및 2014년 3월 6일 “M&A 활성화 방안” 등)을 법안에 반영한 것이다.

5) 2015년 4월 14일 금융투자협회 안내문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사모단독펀드를 인정하고 있다. 사모단독펀드 설정·운용의 예외적 허용 대상범위를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① 수익자가 「국가재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 주체(이에 준하는 외국기금 포함), 수익자가 「자본시장법」 제251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변액보험), ② 수익자가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조합(공제회·공제조합)이거나,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까지 확대하여 예외기금을 허용하였다.

6) 집합투자기구의 세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김수성과 윤성만(2013)의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게 됨에 따라 투자일임의 형태보다는 집합투자기구의 소득분배가 다소 유리하다. 그러한 이유는 집합투자기구의 분배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비처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연기금의 해외사모단독펀드 투자와 해외투자일임투자의 상호비교

연기금이 해외단독사모펀드를 투자한 경우와 해외투자일임을 투자한 경우를 상호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최근 법개정으로 인하여 연기금을 비롯한 각종 공제회는 간접운용방식을 집합투자기구의 방식에서 투자일임계약방식으로 마지못해 전환을 하였다.

현행 세법상으로 볼 때 해외자산의 운용방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한도가 상이하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받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은 소득의 발생원천에 불문하고 모두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그 소득의 발생 원천이 주식매매이익, 채권매매이익 또는 파생상품의 매매이익인 경우에는 동 소득의 50% 상당액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50% 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⁷⁾

과거에는 해외사모단독펀드를 통해 가득한 소득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투자일임의 특성상 모든 가득한 소득을 소득의 고유특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100%설정할 수 있었지만, 2015년도부터는 투자운용이익을 세분화하여 해외주식매매이익, 채권매매이익 및 부동산임대소득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환차익 거래 등에 대하여 발생소득(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을 의미함)의 50% 상당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에 있어서 세액의 환급에 대한 부분 또한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국내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기 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를 받게 되지만 해외투자를 할 경우에는 기 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 재무제표에는 해외투자에 따른 소득의 원천세 부분을 기 납부세액으로 계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연기금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 개정을 통하여 전액 설정토록 하였으며, 일부 공제회 등에 대하여는 매매이익관련 부분에 대하여 50%를 설정함에 따라 해외에서 원천세로 납부한 부분은 기 납부세액으로 환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투자를 할 경우에는 법인세의 부담이 전혀 없게 되지만 해외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어 그만큼 국부의 국외유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연기금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3장에서 별도로 언급하고자 한다.

참고로 자산의 간접운용방식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범위를 표로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해외사모단독펀드인 집합투자기구와 해외투자일임 자산의 세무상의 실익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해외투자일임계약에 의한 자산운용과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자산운용의 경우에 있어 소득구분의 차이와 세무상 실익을 비교해볼 경우 가장 큰 차이는 해외금융자산의

7) 그나마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 개정을 통하여 일부 연기금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연기금의 운용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는 거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매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연기금의 해외자산 운용방식에 따른 준비금 설정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구 분	소득의 종류	준비금 설정 비율		법인세효과	원천세 환급
		전액 설정	50% 설정		
해외집합투자기구	해외 배당소득	○		과세 없음	×
해외투자일임자산	해외 이자소득	○		과세 없음	×
	해외 배당소득	○		과세 없음	×
	해외 주식매매이익 [☆]		○	50%는 과세됨	×
	해외 채권매매이익 [☆]		○	50%는 과세됨	×

(주) ☆는 세무상 이월결손금(10년) 존재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함.

2. 미국 연방세법 892 조항의 이해

가. 892 조항의 개요

미국의 해외국가 기관에 적용되는 세법 규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세법 Section 892조항에 따르면 해외국가 기관이 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 채권 및 기타 미국증권 투자로부터 얻은 수익(이하 통칭 ‘Good Income’)에 대하여 892 조항에 근거하여 미국 소득세를 면제한다. 하지만 국경과 관계없이 상업적인 활동에서 얻은 소득, 해외정부의 통제를 받는 상업적 기관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생성된 소득, 해당 기관의 지분 처리를 통해 만들어진 소득(이하 통칭 Bad Income)인 경우는 892조항의 면세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⁸⁾

해외국가 기관은 국가의 일부(Integral Part)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관(Controlled Entity)을 포함한다. 국가의 일부는(Integral Part) 외국사람, 실체, 조직, 공사, 관리국, 펀드, 대행기관, 또는 정부의 통치권을 구성하는 실체이며, 이들의 순이익은 자기계정 또는 정부의 다른 계정으로 귀속되어야 하며 그 일부가 사적인 이익을 갖지 않아야 한다.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관(Controlled Entity)은 독립된 법적 실체로써 1) 해외국가기관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된 기관을 통해 직

8) 미국 세법 892 조항의 적용에 대해서 이러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원 취지는 무분별한 사업활동(Commercial Activity) 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사업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민간부분(Private Sector)에 불리한 과세취급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세경쟁의 중립성 차원에서 고려된 것으로 추측된다. 가령 민간부분에서 민간주자 시설을 활용하여 주차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공부분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의 주차료를 받는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경우 민간부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접 통제를 받고 100% 소유되며, 2) 해외국가의 법에 의해 구성되며, 3) 손익이 자기계정 또는 정부의 다른 계정으로 귀속되어야 하며 그 일부가 사적인 이익을 얻지 않으며, 4) 해산 시 자산은 국가기관에 귀속된다.

국가의 일부(Integral Part)는 상업적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892조항의 혜택을 상실하지 않는다. 즉 892면세 혜택은 Bad Income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Good Income에 대해서는 여전히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관(Controlled Entity)은 상업적 활동에 참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전체 수익(수동적인 소득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Good Income 포함)에 대하여 면세혜택 자격이 박탈된다.

나. 투자방법의 차이에 따른 892 조항의 세제 취급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에서 수취하는 경우에 ‘해외정부기관(foreign government)’에 지급하는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미국 연방세법 제892조가 본 규정에 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다.

해외공모펀드와 해외투자일임은 해외에 투자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호간에 큰 차이가 있다. 법적 자산의 법적소유주가 해외집합투자기구에 있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투자자인 국내연기금에 있느냐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과세권의 지위(Status) 결정요인에 있어서도 해외집합투자기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지역에서 과세를 하게 되지만, 해외일임투자의 경우에는 공단의 미국내 세금의 지위(Status)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진다. 위에서 언급한 면세단체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따라 미국내 투자소득에 대하여 과세의 향방이 달라지게 된다. 해외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배당소득금액의 15%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해외일임투자의 경우에는 Section 892의 조항에 따라 면세단체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과세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연기금이 해외투자운용에 따라 얻은 소득에 대하여 미국 조세법 892조항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해외국가기관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의 수동적인 소득(Passive Income)에 대하여는 면세혜택을 받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투자방법에 따른 과세소득 금액

구 분	해외공모펀드	해외투자일임
자산의 법적 소유자 (납세의무의 주체)	해외집합투자기구	연기금
과세지위(Status)결정요인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지역	연기금의 미국내 세법상의 지위(Status)
원천징수 (주식 및 채권)	배당금액의 15%	Section 892(외국정부) 대상기관은 면세

3. 미국 세법 892조항에 따른 면세단체의 적용 여부

우리나라의 연기금 및 공제회 기금 등이 해외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자신의 법적 지위(Status)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해외정부에 대하여는 면세(Exempt)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연기금이 해외투자를 하게 될 경우 해외정부기관으로 인정받도록 사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미국 연방세법 제892조는 해외정부기관(foreign government)에 지급하는 주식 및 채권 혹은 기타 미국 내 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이를 법에서는 892 Exemption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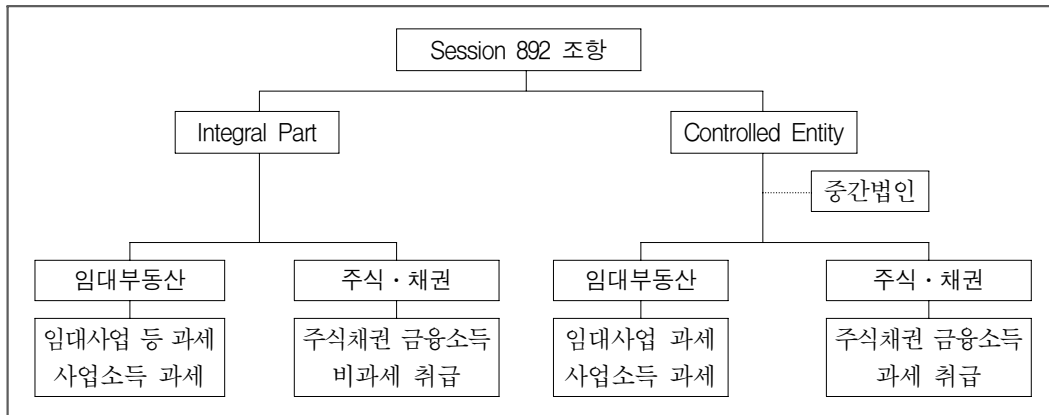
미국 연방세법에서 제892조에 따른 해외정부기관에는 해외정부(foreign sovereign) 그 자체 만 외국정부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정부의 필수부분(integral parts), 정부소유기관(controlled entities), 해외정부의 정치적 하부조직(political subdivisions)이 포함되고 있다. 즉, 미국연방세법 제892조는 ‘해외정부기관(foreign government)’에 지급하는 주식, 채권 혹은 기타 미국 내 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이하 ‘892 Exemption’이라고 함)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은 각각의 지위(Status)에 따라 다양하게 세제의 취급을 하고 있다. 특히 해외정부의 필수부분(integral parts)이나 정부소유기관(controlled entities)이나에 따라 다르게 취급받고 있어 국내 연기금은 정부기관으로서 면세취급을 받고자 정부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고 있다.

국내 연기금이 해외정부의 필수부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통치권한 있는 공공기관(governing authority)을 구성하고 있는 단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 연방세법 및 관련 규정에서는 ‘해외정부의 통치권한 있는 공공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통상적인 의미 및 이와 관련된 미국 국세청(이하 ‘IRS’)의 예규(private letter ruling)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과세행정의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 규정(Treasury Regulations) 1.892-2T(a)(2)는 해외정부의 필수부분을 ‘외국의 통치권한 있는 공공기관을 구성하는 사람, 조직, 기관, 부서, 펀드, 기구, 기타 단체(any person, body of persons, organization, agency, bureau, fund, instrumentality, or other body, however designated, that constitutes a governing authority of a foreign country)’로 정의하고 있다.

9)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세무 지위(Status)는 미국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W8 form 제출을 함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 연기금에 적용 가능한 W8 서류는 W8-EXP와 W8-BEN서류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W8-EXP는 미국과의 조세 협약에 따라 Foreign Governments, Foreign tax exemption organization, Foreign Private Foundation etc. 등의 기관이 면세적용을 받는 대상에 한해서 사용하는 form이다. 반면, W8-BEN은 W-8EXP를 사용할 수 없는 Entity나 Individual이 국제조세협약에 의거한 Tax Treaty Rate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Form)에 해당된다. W-8BEN을 제공할 때는 Part II. 10. Special Rates and Conditions란에 적용을 원하시는 대상 income이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필히 기입하여야 한다.

국내 연기금이 해외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이 미국 연방세법 제89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892 Exemption이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국내 연기금이 투자하여 얻은 소득으로 892 Exemption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연기금이 해외에서 가득한 미국 연방세법 제892조 제(a)항에 열거된 소득이어야 한다. 그런데 동 조항에는 미국 내 주식, 채권, 혹은 기타 해당 해외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stocks, bonds, or other domestic securities owned by such foreign governments)의 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은 상업활동(commercial activity)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상업적 지배법인(controlled commercial entity)이 수취하는 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하고 있다. 미국의 892조항에 대한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미국의 892조항의 도해



Integral Part는 정부의 일부로 과세상의 지위(Status)를 부여받을 경우 상업적인 활동을 통한 소득을 제외한 주식과 채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securities)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Controlled Entity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세금 지위(Status)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상업적인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수동적으로 발생한 소득(주식 및 채권투자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 연기금의 일부로서 컨설팅을 받은 기관의 자료를 참조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연기금은 (i) 미국세법상 해외정부(foreign sovereign)의 필수부분(integral part)으로서 ‘해외정부기관(foreign government)’에 해당하며, 본건 소득은 미국 내 증권(securities)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미국연방세법에 따른 892 Exemption의 적용이 가능한 소득이고, (ii) 국내 연기금이 가득한 소득은 미국 세법상 ‘상업활동(commercial activity)이 아닌 활동’으로 분류되며, (iii) 국내 연기금이 해외정부(foreign sovereign)의 필수부분(integral part)에 해당하는 이상 국내 연기금이 해외투자로부터 얻은 소득은 ‘상업적 지배법인(controlled commercial entity)’이 수취하는 소득으

로 분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미국 연방세법 제892조에 따른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Controlled Entity는 정부기금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모든 사업계획과 운영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으며, 해산시에는 모든 자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된다. 반면 Integral Part는 기본적으로 정부권한(governing authority)이 있어야 하며,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업행위 시에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주식채권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행위의 소득은 good income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채권 이자 등의 소득은 bad income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bad income이나 good income에 대하여도 면세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사업행위가 있으면 이를 사업적 행위(CCE : controlled commercial entity)로 보아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892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부동산에 과세를 하더라도 주식·채권 등의 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간법인으로서의 Viechle을 설정하면 금융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세를 면할 수 있다.¹⁰⁾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기금에서 Controlled Entity로 분류될 경우 부동산투자 건에 대하여 중간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Integral Part는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증권 투자소득에 대하여는 면세단체의 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4. 892 조항의 적용 단계

국내 연기금 등의 기관이 해외정부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순수입이 어느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기관이 미국연방세법 제892조에 따른 해외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소득이 미국연방세법 제892조에 따른 다른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러한 소득에 관하여는 892 Exemption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해외 법인으로 취급되어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연기금 등이 미국연방세법 제892조 및 관련 미국 재무부 규정에 따른 해외정부기관으로서 미국 원천소득에 대한 892 Exemption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각 연금공단이 미국 연방세법에 따른 해외정부기관에 해당해야 하며, 둘째, 연기금의 미국 원천소득이 미국 연방세법 제89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892 Exemption이 적용되는 종류의 소득이어야 하고, 셋째, 각 연금 공단의 상업활동(commercial activity)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상업적 지배법인(controlled commercial entity)이 수취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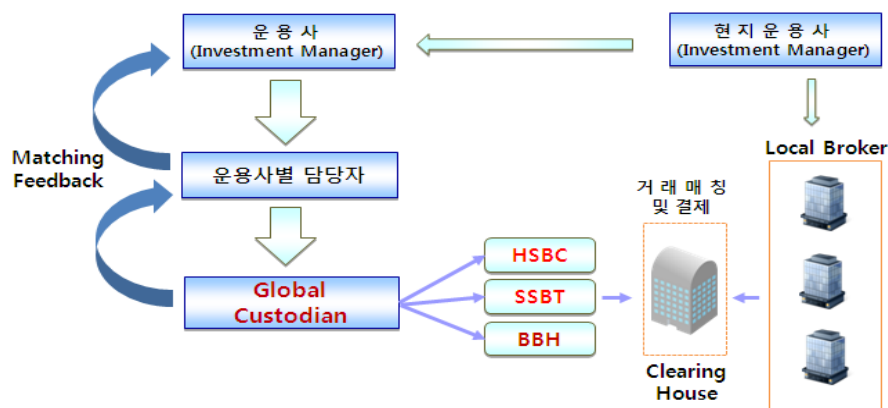
10) IP나 CE의 경우 연기금에 있어서 중간법인을 설립하여 하나의 viechle을 설립하면 면세단체로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과다법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법인이 부동산을 50% 미만으로 갖고 있으면 CCE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다.

최근 각 연기금의 해외사모단독펀드가 금지되어 기존과 동일한 형태의 투자를 하되 투자형식을 변경하여 해외투자일임의 형태로 해외투자를 하고 있다. 해외투자를 함에 있어서 단독펀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양자 간의 세제상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해외사모단독펀드는 해외투자의 주체가 각 자산운용사가 되어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은 투자이익을 분배금인 배당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외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은 환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투자일임의 경우에는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세제취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내투자의 경우 사모단독펀드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징수되고 남은 분배금을 받게 될 경우 연기금의 법인세 신고시에 기 납부한 세액은 환급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투자일임의 경우 운용주체가 국내 연기금이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금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최근 각 연기금은 법무법인이나 BIG4에 해당하는 글로벌 회계법인을 통해 각 연기금의 법적 지위(Status)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이를 통하여 투자국에서 면세단체로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투자 직전에 연기금이 해외정부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글로벌 자산보관회사인 SSBT나 HSBC 등과 같은 글로벌 자산회사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 2>는 국내 및 해외 글로벌 보관은행간의 원천징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 자산보관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2> 국내 및 해외 글로벌 보관은행간의 원천징수 관계도



5. 연기금의 유형으로 살펴 본 892 조항의 적용

연기금의 유형으로 본 892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볼 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단은 정부단체로 규정할지 아닐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다. 연기금은 정부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Integral Part**는 892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업행위 자체에 대하여만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증권투자 이익 등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Controlled Entity**는 사업행위를 할 때에 **good income**이 변질되어 주식과 채권 등의 투자행위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이미 국내에 많은 임대부동산을 활용하여 사업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세단체로 규정받지 못하게 될 경우 해외에 투자된 채권, 주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면세로 규정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3조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2에 의거 설립된 기금으로서 다양한 기금운용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득된 모든 이득에 대하여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고용목적사업준비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연금회계준칙은 연금급여 지급으로 인해 장래 기금이나 국가가 부담할 경제적 의무를 파악하기 위해 공적연금기금이 미래 지급할 연금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은 2011년 결산시점부터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여야 한다. 연금회계준칙의 적용범위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회계에 적용하고 있다.

고용주실체란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한 고용주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사용자가 고용주에 해당되어 국가회계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있으며, 사학연금 또한 국가회계의 연금충당부채 계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공무원연금에 비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다. 사학연금은 4대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동시에 특수직역연금으로서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과 제도가 대동소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은 기금회계 측면이나 연금회계 측면에서 볼 때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국가가 기금운용의 운용주체가 되어 운용이익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는 반면 사학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주체가 공단이라고 하는 특성에서 비롯되어 기금회계 측면에서 볼 때 운용이익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연금회계 측면에서 볼 때에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국가회계 재무제표에서 제외되어 사학연금은 4대 공적연금 중에서 최고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는 것이다. 연기금의 법인세 과세와 연금충당부채 국가회계대상 포함 여부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연기금의 법인세 과세와 연금충당부채 국가회계대상 포함 여부

구 분	법인유형	법인세과세	연금충당부채 계상	비 고
국민연금	비과세법인	비과세	불포함	연금보고서 주식기재
군인연금	비과세법인	비과세	포함	재무제표본문에 기재
사학연금	비영리법인	과세	불포함	연금보고서 주식기재
공무원연금	비영리법인	과세	포함	재무제표 본문에 기재

(주) 김수성과 문성훈(2014), 공적연금 운용단계 이익의 과세 재고찰,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3호 133면을 참조함.

III. 해외투자에 따른 과세의 이슈와 문제점

1.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불가의 문제점

연기금의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민 및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자로 외국에 현지법인, 지점, 영업소, 개인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현지 법인 등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의 세법에 의하여서도 소득세 혹은 법인세가 부과된다. 그 결과 국내 거주자의 국외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한국과 외국 상대방 국가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한국의 신고납부세액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현행 세법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세법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 받을 수 있다. 첫째, 소득세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 내 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 내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지 국가인 해외에서 일차적으로 과세되는 동시에 거주지 국가인 국내에서도 합산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동일 납세자의 동일과세기 간소득에 대하여 2개 국가에서 과세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법은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7조를, 개인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국내에서 공제하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내국인이 지배하고 있는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내국인이 간접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로 나뉘고 있다. 그리고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6에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 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며, 조세조약에 따라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¹¹⁾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현황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현황

구 분	법인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제57조	상증법 제29조 및 제59조
일반납부세액공제	적용 ¹²⁾	적용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¹³⁾	적용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¹⁴⁾	미적용	—

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과 공제방법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과 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¹⁵⁾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6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지분의 25%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간접납부세액공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 12) 외국법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97조에 동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 13)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14)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특례규정을 두어 【외국자회사법인세법×(수입배당금/소득금액-법인세액)】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 15)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소통 57-0-1)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공제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1) 또는 (2)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¹⁶⁾

(1)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일반적인 공제방법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가 된다. 이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 또는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가능하다.¹⁷⁾

$$\text{일반한도액} =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text{한도액} =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금액} \times (1 - \text{감면비율})}{\text{종합소득금액}}$$

(2) 필요경비산입 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만이 가능하다.¹⁸⁾

나.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 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으로 한다.¹⁹⁾ 이 경우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해당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즉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²⁰⁾

또한, 공제절차는 다음과 같다.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16)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0조 제3항

17)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제7항

18)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제6항

19)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

20) 소득세법 제57조 제③항 (①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② 위 '①'과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령 §117 ③).

연기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계산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해외에 ETF를 통하여 300억원의 매매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하여 15%의 세율로 원천세를 45억원 해외에 납부하였다고 가정을 하자. 국내에 300억원에서 45억원을 제외한 255억원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하여 국내에서는 전혀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45억원은 국내에서는 전혀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다.

2. 연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과세적용의 문제점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문제점

(1) 각 연·기금의 세제취급 상이에 따른 형평성 상실

현행 연·기금의 세제취급에 있어서 정부형기금과 위탁형기금에 대하여 세제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형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반면, 위탁형기금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시에 가득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를 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으로써 손금산입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형기금과 위탁형기금은 동일한 투자대상에 동일한 투자형태로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따른 운용이익에 대하여 과세형태는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 이는 기금의 관리·운용주체에 따라 세제취급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기금은 국민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의 기금운용이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한 위탁형기금인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인 연금기금은 동일한 세제취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간에 서로 상이하여 현행의 과세취급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여진다.²¹⁾

(2) 기금운용 주체별 법인세 과세 현황과 기금의 자산 내역

우리나라는 연·기금이 2014년말 현재 64개가 있는데, 이중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정부인 기금이 있는 반면, 관리주체가 각 공단이나 공사에 위임하는 기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형

21) 김수성, 2009, 연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관한 연구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기금은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반면, 위탁형기금을 관리하는 공단이나 공사 등이 관리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운용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기금에 대한 과세로는 각각의 예규와 질의로서 살펴볼 수 있다.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연·기금 중에서 국가가 설치한 연·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기타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다.²²⁾ 또한,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동일하다.²³⁾ 그러나 만일 국민연금기금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비과세법인으로 모든 금융소득이 비과세되고 있지만, IP로 인정받게 되면 해외투자시에 원천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CE로 분류하게 될 경우에는 ETF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소득 면세 적용을 받기가 곤란하여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3) 기금의 자주권을 포기하게 하는 문제점 발생

우리나라 기금 중에서 일부 기금의 경우에는 면세단체로 규정받기 위해서는 각 기금의 관리운용주체의 자주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면세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연기금 중에서 해외투자가 가능한 여유자금을 갖고 해외자산을 운용하는 기금은 그다지 많지 않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과 일부 연기금만이 가능하며, 일부 공제회 기금 등이 해외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운용주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달라지게 된다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관리운용의 주체에 따라 상이한 과세취급을 받는 것 또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만약 공무원연금기금이 행정안전부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이름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기금운용이익 또한 국가에 귀속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공단 자체는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실제적으로는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국가로부터 일부 보조금이나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가의 기금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적연금 기금이나 국가기금 등은 모두 정부로 인정하여 해외 투자시에도 정부차원에서 이를 국가로 인정하는 상호협약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투자와 해외투자의 차별화는 불필요한 국부의 국외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조율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해외투자일임 변경에 따른 연기금의 세 부담 차이 사례분석

2015년부터 해외사모단독펀드의 투자금지로 인하여 국내 연기금은 해외투자일임으로 전환하

22) 채소득 22601-279, 1998. 2.28

23) 법인 46013-1553, 1999. 4.26

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투자일임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의 해외사모단독펀드에 비하여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기존에는 사모단독펀드로서 펀드환매 이익금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반면, 해외투자일임을 통하여 배분된 소득은 각 소득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각 세목별로 구분하여 소득을 구분하게 되고 각 세목의 종류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비율이 상이하하여 세부담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해외 PEF에 국내 연기금이 투자한 것으로서 사모단독펀드의 경우와 해외투자일임의 경우의 세부담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²⁴⁾ 다음의 사례는 국내 연기금이 해외에 1조원을 투자한 경우로서 1,000억원을 분배받았다고 가정하자. 각 소득의 유형별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주식양도소득이 각각 250억원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 전체 원천소득세에도 차이가 있게 되고 국내에서 이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의 차이도 있게 된다. 1,000억원에 대하여 국내의 연기금이 해외에 투자할 경우 펀드로 투자시에는 원천별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액 배당으로 보아 원천세율 20%로 200억원을 원천징수 하게 된다. 그러나 원천별로 과세한다고 할 경우 각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세율에 따라 차등하여 원천징수하게 된다. PEF의 투자시에 외국계 자본의 동업기업과세특례 부여 전과 부여후의 세수금액의 차이 예시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해외단독사모펀드와 해외투자일임의 세부담의 차이 예시

구분	해외단독펀드	해외투자일임
투자액	1조원	1조원
총배분이익	1,000억원	1,000억원
소득구분	배당소득	이자, 배당, 사업, 주식양도소득
원천소득금액	$1,000\text{억원} \times 20\% = 200\text{억원}$	$1,000\text{억원} \times 20\% = 200\text{억원}$
국내 연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	이자소득 : 250억원 배당소득 : 250억원 사업소득 : 250억원 주식양도소득 : 250억원 총 1,000억원	이자소득 : 250억원 배당소득 : 250억원 사업소득 : $250\text{억원} \times 50\% = 125\text{억원}$ 주식양도소득 : $250\text{억원} \times 50\% = 125\text{억원}$ 총 750억원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율과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용한다.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전에는 1조원의 투자자금에 대하여 1,000억원을 분배받을 경우 원천소득세로 200억원이었으나, 세제혜택을 부여한 후에는 1,000억원에 대하여 250억원이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

24) 위에서 언급한 사례는 해외투자를 가정으로 한 것 이지만 미국투자의 경우로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에 따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수의 금액이 감소하여 법개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참고로,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국내원천소득 종류	세 율	지방세 반영*
• 이자 및 신탁의 이익 (채권 이자소득)	20% (14%)	22% (15.4%)
• 배당소득 • 인적용역 제공소득 •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사용료 소득) • 기타소득	20%	22%
• 유가증권, 부동산 등 양도소득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	10% (또는 20%)	11% (또는 22%)
•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 사업소득	2%	2.2%

* 지방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

4. 해외 ETF 투자 등의 증가

최근 연기금은 국내투자를 비롯하여 해외 ETF 등 투자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글로벌 투자에 부합한 것으로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최근 연기금은 해외 ETF 투자를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해외ETF 투자에 따라 나타나는 상장 장소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문제점과 역외ETF의 법적 지위(Status)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조세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해외투자를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큰손’으로 불리는 국내 연기금들의 국내 주식시장 기피 현상이 최근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국내에 투자할 자금을 대신 해외 주식과 대체 투자를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²⁵⁾

25) 우리나라 3대 대표 연기금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기금 등과 4대 공제회(교직원 군인 지방행정 과학기술)의 중장기(2016~2017년) 자산운용 배분 전략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거나 동결할 것으로 보였으며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430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2017년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는 20% 이상이다. 2014년 말에 19.6%를 운용하였다. 또한, 14조원을 운용하는 사학연금 역시 국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22조원을 운용하는 교직원공제회는 12.6%였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2017년엔 13.0% 수준으로 소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6조원 규모의 지방행정공제회 역시 22.0% 수준인 국내 주식 비중을 2016년엔 21.0%로 줄인다는 운용계획을 세웠다. 공무원연금의 중장기 운용 전략에 따르면 올해 28.8%인 국내 주식 비중은 2017년에 28.6%로 줄어든다.

참고로 국내 주요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국내 주요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계획

(단위 : %, 조원)

기관명	2014년	2015년	중장기계획	규모
국민연금	19.6	20	20%이상(2017년)	430
사학연금	25.4	25.07	미정	12
공무원연금	27.9	28.8	28.6(2017년)	4
교직원공제회	12.6	12.6	13(2017년)	22
행정공제회	27.4	22	21(2016년)	6.3
과학기술공제회	8	8	국내는 동결, 해외주식은 증가(2017년)	2.7

* 각 주요 연기금의 자료를 참조로 함.

IV. 해외투자자의 면세단체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1. 연기금의 면세단체 규정 마련 검토

해외투자에 있어서 국내에서 연기금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상호면세주의를 적용하여 자국내에서 외국 연기금의 투자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고 면세취급을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국내 연기금이 해외에 투자를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연기금의 면세단체의 취급에 있어서 투자국과 투자건마다 일일이 면세단체로 규정받기에는 투자의 적시성이 결여되어 있고 과세취급의 차이로 인하여 투자가 왜곡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호협약에 의하여 면세단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유럽연합에 가입한 가맹국간에는 상호면세주의를 적용하여 해외 투자시에 과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과세조치의 시사점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가. 연기금이 해외정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검토

연기금이 해외정부의 필수부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통치권한 있는 공공기관(governing authority)’을 구성하고 있는 단체’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연방세법 및 관련 규정은 ‘해외정부의 통치권한 있는 공공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통상적인 의미 및 이와 관련된 미국 국세청(이하 ‘IRS’)의 예규(private letter ruling)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사학연금기금이 국가단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통치권한 있는 공공기관(governing authority)이라 함은 ‘통치하는 정부 관련 단체’를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통치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 정책을 관리하는(즉, 정부 정책을 지시·지도·시행하는 또는 정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부관련 단체(government-related body that governs, meaning it controls, directs, guides, implements, and/or strongly influences governmental policy)’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재무부 규정 1.892T(c)(4)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부기능(government functions)과 그 의미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정부기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일반적 복지를 위한 활동 또는 정부의 특정 기능을 집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내의 연기금 중에서 사학연금기금은 다음과 같이 검토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부담금 징수,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자산의 운용,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및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며(사학연금법 제4조)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 받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지후생 및 연금을 관리·지급한다는 점, (ii) 공단의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립학교 교직원 복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국가 기능의 집행(administer)에 해당하는 점, (iii) 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지후생 및 연금의 관리·지급과 관련하여 사학연기금의 국내외 투자를 관장하는 바, 이는 국가 기능을 지배, 지시, 지도 및 시행(controls, directs, guides, implements)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및 (iv) 교육공무원법 상 사립학교 교직원은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단은 위에서 살펴본 ‘통치권한 있는 공공기관(governing authority)’을 구성하고 있는 단체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과거 IRS의 예규(Private Letter Ruling)를 살펴보면, 국내연기금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는 해외 단체 또는 법인들이 미국 연방세법 제892조에 따른 해외정부의 필수부분으로서 해외 정부기관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회신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i) 현재 미국연방세법 제892조에서 명시하는 ‘통치권한 있는 공공기관’의 정의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ii) 공단이 ‘통치권한 있는 공공기관’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iii) IRS 예규를 살펴보면 국내 연기금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는 단체들이 해외정부의 필수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수의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국내 연기금을 해외정부의 필수부분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한편, 공단을 해외정부의 필수부분으로 분류하더라도 공단이 미국 연방세법 제892조 상의 해외정부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순수입이 어느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연기금의 모든 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한 후 나머지를 모두 기금의 수입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학연금기금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공단은 해외정부의 필수부분으로서 미국 연방세법 제 892조에 따른 해외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사학연금기금이 892 Exemption이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 운용이익이 892 Exemption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세법 제892조 제(a)항에 열거된 소득이어야 하는데, 동 조항에는 미국 내 ‘주식, 채권, 혹은 기타 해당 해외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stocks, bonds, or other domestic securities owned by such foreign governments)’의 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연기금의 투자는 미국 내 주식, 채권 및 기타 미국 내 증권(미국 내 상장된 ETF 등)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방식이고, 이는 위 제892조 제(a)항에서 열거하는 면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본건 소득은 미국연방세법 제892조 및 892 Exemption의 적용이 가능한 소득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기금의 운용이익이 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인지의 여부 검토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이 ‘상업활동(commercial activity)’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상업적 지배법인(controlled commercial entity)’이 수취하는 소득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89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892 Exemption의 적용이 가능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연기금의 해외 운용이익이 상업활동(commercial activity)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892 Exemption이 적용되지 아니한다.²⁶⁾

미국 재무부 규정 1.892-4T(c)는 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열거하고 있는 데, 주식, 채권 또는 기타 증권에 대한 투자(investments in stocks, bonds, and other securities)는 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외투자자로부터 인한 소득은 미국 내 ‘주식, 채권 및 기타 미국 내 증권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보이는 바, 본건 소득은 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의 사항을 검토하여 볼 때 국내 연기금 중에서 사학연금기금은 (i) 미국세법상 해외정부(foreign sovereign)의 필수부분(integral part)으로서 ‘해외정부기관(foreign government)’에 해당하며, 본건 소득은 미국 내 증권(securities)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미국연방세법에 따른 892 Exemption의 적용이 가능한 소득이고, (ii) 본건 소득은 미국 세법상 ‘상업활동(commercial activity)이 아닌 활동’으로 분류되며, (iii) 공단이 해외정부(foreign sovereign)의 필수부분(integral part)에 해당하는 이상 본건 소득은 ‘상업적 지배법인(controlled commercial entity)’이 수취하는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외투자소득은 미국연방세법 제892조에 따른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26) 미국 연방세법 제892조(a)(2)) 참조

3. 상호협약을 통한 면세단체 규정 해결방안 모색

가. 양국가간 기금의 상호 면세주의 인정

BIG4와 같은 글로벌 회계법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면세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미국세법에 따라 면세단체로 규정받기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면세단체로 지정받기에도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투자국이나 투자대상국의 정부 기금에 대하여는 양 국가에서 상호면세가 되도록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세법 892 조항은 *Integral Part*와 *Controlled Entity*로 나누어 차별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연기금은 자신의 세무상 지위(*Status*)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각 연기금이 투자국마다 자신의 세법상의 지위(*Status*)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불필요한 과세행정을 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해외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의 지위(*Status*)가 사전에 정의되지 않아 투자를 꺼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연기금이 세법상에 어떤 상태인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가간에 상호협약을 통하여 국가기금이나 국가에서 인정한 연기금의 경우에는 상호간에 면세규정을 두어 투자한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해외 투자시 상호협약을 통하여 면세단체로 규정됨에 따라 기 납부세액을 환급해준 사례가 있다. 이를 통하여 면세단체의 상호협약의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나. 유럽연합의 상호간의 면세적용 사례 검토 및 시사점²⁷⁾

최근 EU연합에 의하여 각 가맹국간에는 해외 투자시에 이를 면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EU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 가입한 국가 간에 차별화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잇따른 과세와 환급은 투자자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기금에서 투자한 사례로서 해외펀드가 환매된 이후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은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사례는 운용당시에 해외투자수익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세금 부분이 펀드 환매이후 환매(refund)된 사례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사례는 투자시점에 과세의 취급에 대한 사전정의를 되어 있지 않으면 동일 사례는 반복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금에서 운용하였던 차이나펀드의 일부 종목인 동부차이나펀드의 세금 환급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금에서 운용했던 차이나 펀드의 일부 종목 중 2013년 1월 1일부로 중국 정부로부터 배당소득세 납부를 면제받아 중국 과세당국에 기 납부하였던 배당소득세 중의 일부를 대한민국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지 못했던 배당세금에 대하여 해당 펀드의 수익자인 ○○기

27) 2007년 5월 29일부터 2012년 9월 24일까지 운용한 동부차이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운용성과보서를 참조하였다.

금에 지급한 것이다. 동 펀드명은 동부차이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로서 펀드운용기간은 2007년 5월 29일부터 2012년 9월 24일이다. China Agri-industries(506 HK), China Foods Limited (606 HK)가 2013년 1월 1일부로 중국 정부로부터 배당소득세를 면제받게 되어 과거 기간 동안에 중국 정부에 납부했던 배당소득세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기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것이다. 국내에서 운용중인 해외펀드는 대한민국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운용사가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이때 세금환급의 귀속주체로는 ○○기금의 차이나 사모펀드의 해당 내역은 총 10건으로서 아래 <표 8>과 같다. 총 10건의 세금납부 내역 중에서 상위 6건은 중국 정부에 배당세금을 납부하였으나 대한민국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배당세금이 펀드의 수익자인 ○○연금으로 귀속된 것이다. 이밖에 하위 4건은 대한민국 국세청로부터 배당세액을 이미 환급받았다.

<표 8> ○○기금 차이나 사모펀드의 세금환급 관련 내역

종 목 명	배당수령일	세금금액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여부	환급액 귀속주체
China Agri-Industries	—	12,212.80	미환급	○○연금
China Agri-Industries	—	6,016.60	미환급	○○연금
China Foods	—	2,027.52	미환급	○○연금
China Agri-Industries	—	2,878.20	미환급	○○연금
China Agri-Industries	—	2,670.20	미환급	○○연금
China Foods	—	1,583.04	미환급	○○연금
소계	—	HK\$ 27,388.36	0원	
China Agri-Industries	2010.6.28	1,640.20	환급	국세청
China Agri-Industries	2010.9.30	4,870.79	환급	국세청
China Foods	2010.6.22	2,063.10	환급	국세청
China Foods	2012.7. 4	986.00	환급	국세청
소계		HK\$ 9,560.09	1,259.924원	

(주) 2007년 5월 29일부터 2012년 9월 24일까지 운용한 동부차이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운용성과보고서를 참조함.

위의 환급 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해외펀드의 경우 펀드 전액 환매고지를 받는 즉시 모든 종류의 해외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이를 결제하는 데에만 해도 보통 거래일+2 혹은 거래일+3 영업일이 소요된다. 해당통화를 이체하고 거래일의 시장환율을 적용하여 환급받게 되어 적게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홍콩 주식만

을 편입한 펀드의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환매고지를 받은 즉시 수익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홍콩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마지막 매도가 이루어진지 2영업일 후에 결제가 이루어지면 홍콩 달러를 수령하게 되고 이를 국내계좌로 이체하는 데에도 약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국내계좌에서 홍콩 달러를 환전하는 데에도 1일 이상이 소요된다. 환해지를 시행한 경우에 해지에 사용되었던 통환선물의 반대매매 또는 선물환의 계약 종료를 시행하기에는 여전히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다. 이를 피하기 위하는 위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피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외국정부에서 국내 연기금에 대하여 면세단체로 인정하고 과세를 하지 않도록 양 국가 간에 조세협약을 통하여 해외펀드의 운용이익은 자국 내에서만 과세하도록 상호간의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국내 연기금이 해외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기존의 해외단독사모펀드가 해외투자일임으로 전환됨에 따른 세제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해외투자일임의 형태는 해외사모단독펀드에 비해 회계처리가 다소 복잡할 뿐만 아니라 현행 세법에서도 해외사모단독펀드에 비해 다소 불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에는 해외단독사모펀드의 운용주체가 자산운용사로 되어 있어 운용에 대한 모든 것이 자산운용사 소유로 되어 있으며, 세제상의 문제도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투자일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기금 관리운용의 주체가 국내 연기금으로 되어 이에 대한 세무조정 및 과세상의 이슈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해외에 투자된 운용이익에 대해 기존에는 배당소득으로 전액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연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투자일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형태와 소득유형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등 많은 과세상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즉 각종 해외투자에 따른 증권매매이익(해외주식매매이익, 해외채권매매이익 등)이 발생할 경우에,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 중 50%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투자할 경우와 국내에서 투자할 경우에 과세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내 연기금은 대부분 법인세 과세상 측면에서 볼 때 세금을 내는 기관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즉 국내에 투자를 하였을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해 기 납부세액으로 전액 환급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해외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측면은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에 비해 다소 불리한 세제상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 시에 해외 정부기관으로부터 국내 연기금이 면세단체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

다. 이를 위해 국내 연기금들은 최근 면세단체로 규정받고자 하고 있으나 투자국마다 투자건마다 일일이 투자 상대방 국가와 조세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잡함이 있었다. 이를 간단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의 상호협약에 따른 면세단체의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연기금이 해외 투자 시에 면세단체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전조율의 과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과세의 불확정으로 인해 세무적인 이슈가 해결되지 않아 투자에 적합한 시기에 투자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투자국가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연기금 등이 해외투자를 함에 있어서 금융소득 중의 일부에 대해 면세단체(Exempt Entity)로 규정하여 원천소득징수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미국세법 892조항을 적용하여 면세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국가기관은 국가의 일부(Integral Part)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관(Controlled Entity)에 대해 면세단체로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의 일부로 보는 경우에는 Integral Part로 규정하여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면세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관인 Controlled Entity로 간주되면 주식 및 채권투자자로 인한 금융자산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기금의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과세상의 취급이 달리 적용될 소지도 있다. 국내 동일 연기금에 대해 일부 연기금은 면세단체로 지정되어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반면, 일부 연기금에 대해서는 면세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과세단체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기금으로 인정되거나 정부의 일부로 보는 정부기금에 대해서는 면세단체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학연금기금과 같이 민간단체에 위탁된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892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법인세 과세대상기금과 관리운용 주체를 별도로 살펴보았다. 각 기금간의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최근 국내 연기금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 ETF의 직접투자에 대해 투자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해외투자를 운용하는 2인 이상의 해외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게 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 되고, 국내에서는 이를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게 되어 양자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연기금의 면세단체 규정을 도입하여 연기금의 비과세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역외 ETF의 법적 지위(Status)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 여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상호협약을 통한 면세단체 규정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양 국가 간에 상호협약을 통해 국가기금이나 국가에서 인정한 연기금의 경우에는 상호 간에 면세규정을 두어 투자를 받은 나라가 아닌 투자한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OECD 국가 간에 해외 투자시 상호협약을 통해 면세단체로 규정됨에 따라 기 납부세액을 환급해 준 사례가 있다. 이를 통해 면세단체의 상호협약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기금이 해외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존과는 다른 투자관행으로 인해 세무상 이슈

가 발생한 것을 분석하고, 해외투자운용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한 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인정하는 모든 연기금에 대해 면세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상호협약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연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국제조세적인 측면을 금융세제와 연결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해외투자일임 전환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민정. 2013. “해외투자펀드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영. 2005. “현행 외국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6권 제2호 : 7-38.
- 김수성. 2009. “연·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26권 제2호 : 117-155.
- _____. 문성훈. 2014. “공적연금 운용단계 이익의 과세 재고찰 : 과세도관이론(Conduit Theory)과 연금충당부채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3호 : 105-143.
- _____. 윤성만. 2013. “투자일임계약자산과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차이가 기관투자자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조세연구 제11-3집 : 239-280
- 마영민·오 윤. 2007. “국제투자펀드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한국세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손영철. 2010.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계간 세무사 제28권 제3호, 한국세무사회
- 안종석·구자은. 2006. “주요국의 이중과세배제방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현황과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 06-04.
- 이영한·문성훈, 2009, “ETF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와 세금자본화”,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 이준규·정규언. 2009.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의 환산과 관련한 과세문제”. 세무학연구 제26권 제4호 : 69-86.
- 이창희. 2014.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제 문제”. 서울대학교법학 제55권 제1호 통권 제170호 : 477-519.
- 최문수. 2007. “간접투자방식 과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세무와회계저널 제8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 53-72.
- 홍범교·손영철·기은선, 2009. “ETF 및 파생결합증권 과세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황규영·김유라. 201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고찰 및 개선”.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2호 : 149-173.

An Improvement Plan on Tax-Exempt Entity Provisions in Pension Funds'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Focusing on the US Tax Law Section 892-

Su Sung Kim* · Won Seok Choi**

〈Abstract〉

Recently domestic pension funds have expanded foreign investment and preferred the foreign investment entrusted. Domestic pension funds can't take foreign tax payment credit on tax amounts paid in a foreign country in the foreign investment. This is regarded that the foreign investment is more unfavorable tax treatment than the domestic investmen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hat domestic pension funds be recognized as tax-exempt entity from foreign country's taxing authorities. And so the tax-exempt entity provisions to mutual agreement between two countries are needed.

The US tax law enacts a withholding tax exempt from the levy in designating tax-exempt entity on some of financial income from domestic pension funds' foreign investment. And The US tax law enacts tax exemption in case that foreign pension funds be regarded as investing countries' foreign government. The US tax law enacts foreign government as integral part and controlled entity, the former is tax exempt from financial income and the latter is taxed on financial asset management profit.

This study presents the improvement plan on tax problem to foreign investment. First, it is argued that domestic pension funds be tax exempt in designating them as the US tax law's tax-exempt entity. Second, it is necessary that investing countries tax in enacting tax exemption provisions mutually on pension funds by national certification through mutual agreement between two countries.

〈Key words〉 foreign tax payment credit, foreign investment entrusted, tax-exempt entity, integral part, controlled entity, mutual agreement

* Ph.D. of Taxation, The Korean Teachers Pension, mercury@tp.or.kr,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wschoi@uos.ac.kr, Corresponding Author